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CONTENTS

01 부정청탁금지법 홍보만화

01.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 6
02. 저녁있는 삶을 만든 청탁금지법 ····· 7

02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 14
02. "우리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15
03.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16
04. "입원 순서 좀 당겨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 17
05. "음주운전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에게 부탁했다면? ····· 18
06. "토지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공무원인 친구를 통해 부탁했다면? ····· 19
07. "처분 감경해달라" 부탁하면? ····· 20
08. "보조금 받게 해 주세요" 지방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면? ····· 21
09.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 22
10.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의무 발생! ····· 23
11.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 24
12. 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 25
13. 직무관련성 없는 동창끼리 식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26
14. 직원 A, B, C로부터 받은 접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27
15. 1차 식사 접대와 2차 술접대, 1회로 볼 수 있나요? ····· 28
16. "이번에는 내가 살게!" 접대받은 만큼 사주면? ····· 29
17.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접대비 산정은? ····· 30
1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 31
19.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면? ····· 32
20. 친족이 주는 축의금 150만원을 받았다면? ····· 33

03 판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상급자의 부정청탁 ····· 36
02. 이장협의회 전별금 ····· 37
03.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 제공 ····· 38
04.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 39
05.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제공 ····· 40
06. 행정심판 청구인의 축의금 ····· 41
07. 공연 담당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 42
08.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 43
09. 군부대 보안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 44
10.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 45

04 결정례 ····· 48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부정청탁금지법 홍보만화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친구! 오랜만이야!
이번에 우리 회사가
맡은 공사에 대해
부탁할게 있는데~
나는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
수시로 부탁을 받는다.
미안 그건 좀...
그래! 무리라면
어쩔 수 없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보지말자..
특히 친구들의 부탁은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
아, 아니 잠깐!
들어줄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친구야!
이번에도 우리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
쿵!
청탁금지법 알지?
이제 부정청탁은 통하지 않아
친구야.
단호!
아... 맞다. 청탁금지법!
청탁해서 미안해~
이제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저녁있는 삶을 만든
청탁금지법


제 남편은 측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하고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여보... 나왔어.
또 얼마나 마신거야?!
끼-익
조금....
조금은 무슨!
술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엄청 마신거아니야?
털썩
어쩔 수 없어....
접대 때문에....
접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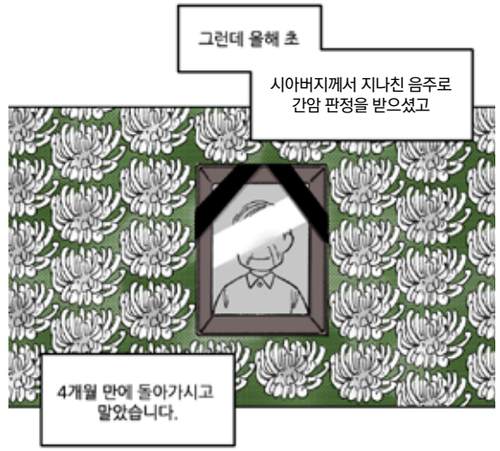

이번에 시청 쪽 공사를
수주해야 해서.
하아


이래저래 공무원들
접대할 일이 많은데....


똑똑!
사장이
술을
못해!
그래서
내가 대신 마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
여보!
방에 가서 자야지!
끼어어-
헉!
술을 얼마나 마시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내일 또 숙취로
고생하겠네...
끼어어-
휙...


그런데 올해 초
시아버지께서 지나친 음주로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4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보.
술, 좀 줄이는게
좋지 않아?
....
술을 자주 마시는 남편이
걱정되어 운을 떼어 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접대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
....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저거.
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접대문화가 사라지는 등
긍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2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02 "우리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03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04 "입원순서 좀 당겨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05 "음주운전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에게 부탁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게..." 공무원인 친구를 통해 부탁했다면?



07 "처분 감경해달라" 부탁하면?



08 "보조금 받게 해 주세요" 지방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면?



09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부정청탁금지법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

*공개적: 요구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

10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 의무 발생!



11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12 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13 직무관련성 없는 동창끼리 식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14 직원 A, B, C로부터 받은 접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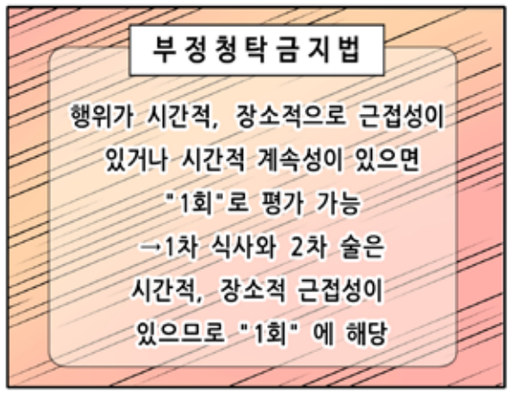
*다만 , 직원 3명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

*직원 3명이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00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15 1차 식사 접대와 2차 술접대... 1회로 볼 수 있나요?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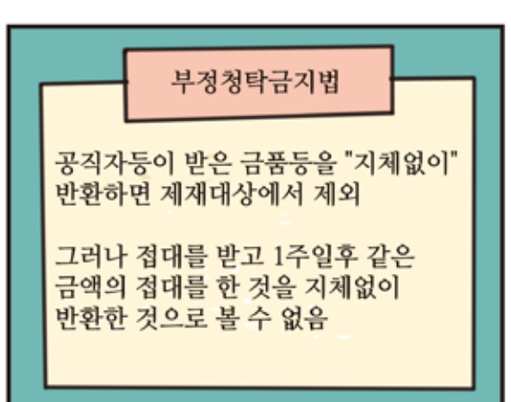
16 "이번에는 내가 살게" 접대받은 만큼 사주면?













17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접대비 산정은?









B가 C로부터 접대받은 비용은?
-〉 40만원 (1인당 20만원 X 2명(A,B))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 비용에 포함!



1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됨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19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면?



20 친족이 주는 축의금 150만원을 받았다면?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3

판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상급자의 부정청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자 2017과4 결정)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2 이장협의회 전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3. 자 2017과21 결정)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3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7. 자 2016과204 결정)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4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2. 5. 자 2016과76 결정)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5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4. 자 2016과384 결정)



Point!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경찰에게
비교적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수수 경위, 금품이 반환되어 경찰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김위반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제공 금액의 3배)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6 행정심판 청구인의 축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자 2016과290 결정)



Point!

나청구와 김심판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닌 점,
김심판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우편환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청구가 김심판에게 준 우편환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7 공연 담당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Point!

공무원인 조공연, 장무대는 ○○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의 제작사 대표이사 최제작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

조공연, 장무대 : 과태료 10만원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최제작, □□공연제작사, : 과태료 20만원 (제공한 금액의 2배)
(□□공연제작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8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Point!

공직자등인 김감독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인 ○○건설 이사 나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09 군부대 보안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자 2016과547 결정)



Point!

민간인 양사장과 군부대 민간인 출입 업무 담당 김중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10만원 짜리 상품권은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양사장과 김중사의 관계, 상품권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양사장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10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자 2017과102702 결정)



Point!

김대표는 ○○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박공무는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지도 ·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박공무는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까지 직접 김대표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감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으므로
골프접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2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4 결정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 정

사 건 2017과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2016.12.31.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다. ○○재난안전본부는 2016. 5. 경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 ·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서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소방관련업 지도 · 점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2016. 6. 1. 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 · 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2016. 11. 1.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소방서의 서장실에서 ○○주식회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났고, 같은 날 17:40경 ○○소방서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라 한다).

마. 위반자는 2016. 11. 2. 16:20경 ○○소방서의 ○○팀장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라 한다).

바. 신고자는 2016. 11. 3. ○○지사에게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지시를 신고하였고, ○○지사는 2017. 1. 13. 이 법원에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2. 위반자의 주장 요지

①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당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신고자에게 이사건 묵인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식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② 위반자가 2016. 11. 2. 16:20경 ○○팀장에게 한 이 사건 취하지시는 ○○소방서장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현장 완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방서는 현장 완공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 · 감독은 ○○재난안전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 · 감독 계획'에서 제시한 표본점검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감독대상을 임의로 확대 · 추가하여 실시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소방서의 현장 지도 · 감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취하지시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소방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 · 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④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위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거나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 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자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반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반자는 신고자를 만나기 전 주식회사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와 신고자, ○○팀장의 직급 및 관계, 위반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하지시가 위반자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자의 ③, ④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주식회사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 전무이사를 만나고 있었던 점, ㉯ 위반자가 주식회사 ○○ 전무이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위반자의 매제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 점, ㉰ 위반자는 ○○소방서의 공신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팀장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완공검사가 아닌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 · 감독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4조의 문언상 위 조항이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 · 감독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할 것인 점, ㉳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영 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운영계획이 반드시 ○○재난안전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 · 감독 계획'의 추진계획에서 정한 표본점검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선정기준 또한 지도 · 감독 대상에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 · 감독 대상을 임의로 추가 ·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 · 감독은 당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반자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가 위법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른 ○○소방서의 지도 · 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반자의 허물을 덮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취하지시로 인하여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자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말하였다는 '직원한테 부담안가고'의 '직원'은 ○○주식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묵인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태료 부과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청탁급지법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반자는 ○○소방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소방서의 이 사건 운영계획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소방서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소방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로 인하여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이 법원 2016고약16642호),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5.

관 계 법 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 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끝.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 정

사 건 2017과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읍이장협의회

주 문

1. 위반자 A, B을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C를 이장협의회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위반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시 ○○구 C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의회'라고만 한다)는 ○○시 ○○구 C읍의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반자 B는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위반자 A는 2016. 1. 2. 부터 ○○시 ○○구 C읍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1. 자로 ○○시청 D로 발령받게 되었다. 이에 2016. 12. 30. 저녁 무렵 ○○시 ○○구 C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반자 A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다.

다. 위 자리에서 위반자 B는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명의로 위반자 A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라. 이로써 위반자 A는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B는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돈을 제공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2. 위반자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119조).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A가 읍장으로 있는 C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이장협의회 회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위반자 A와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반자 A는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의 인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위반자 A는 이장협의회 임원들의 수에 상응하는 식비 및 노래방비를 위 3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 B는 300,000원을 현금으로 위반자 A 개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식사비 및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한편 해당 식사비는 위반자 A가 개인적으로 지출 한 것이 아니라 C읍의 직원 격려 급식비, 송년행사 급식비 예산에서 이미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②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가 이장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반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장협의회를 위 송별행사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 B는 위반자 A 개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식사비는 C읍의 예산에 의하여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

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전출 직원에 대한 전별금 교부는 과거에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자리에서 돈이 교부되었고, 위반자 A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돈의 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가성이 없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는 금품

수수행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② 읍장과 읍내 마을 이장협의회는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수된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의 수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태료 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돈의 수수 경위, 돈의 액수 및 소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 A, B을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하고,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의 규모, 영리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이장협의회의 회장인 B을 과태료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과2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가. 위반자는 2016. 10. 7. 01:35경 서울 ○○구 ○○로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조사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자신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

다.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경찰관은 위반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1만 원권을 발견한 후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고, 2016. 10. 7. 09:30경 위반자에게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관련자인 위반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경찰관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가 경찰관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설사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가벼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된다.

1)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행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반자의 위반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위반자의 행위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등의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리라고 잘 못 생각하고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액수의 하한(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으로 결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 정

사 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소재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B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의정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과3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9. 20. 08:1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2016. 10. 15. 14:50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위 경위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서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위 경위 ○○○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한편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과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5. 30.경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택매수확인서 등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16. 8.경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위원회 ○○국 B과 C 사무관(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은 위 행정심판의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의 행정심판위원회 상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1. 말경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신혼여행 중임을 알게 되자, 2016. 12. 2.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위반자는 2016. 12. 5. 9:40경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안건 처리를 부탁한 후 위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렸다.

라. 담당 공무원은 2016. 12. 5. 10:00경 D과 소속 주무관으로부터 위 우편환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우편환을 위반자에게 소포로 반송한 후 소속기관장인 ○○회위원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 우편환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금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반자는 예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업무관계로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만 하던 관계였던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 등을 알린 바 없고, 위반자가 우연히 담당 공무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위반자는 전화통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환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우편환을 발송한지 불과 4일 후인 2016. 12. 6.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등 담당 공무원과 위반자와의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⑤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결혼을 축하할 목적으로 제공한 축의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반자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결 정

사 건 2017과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조○○
2. 조○○
3. 윤○○
4. 주식회사 도○○
대표이사 윤○○

주 문

1. 위반자 조○○, 조○○을 각 과태료 1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윤○○, 주식회사 도○○를 각 과태료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조○○, 조○○은 ○○시 산하 ○○문화예술의 전당 소속 공무원이고, ○○문화예술의 전당은 한 ○○회가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위반자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 제작의 뮤직드라마 '○○'를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하였고, 위반자 윤○○은 도○○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반자 조○○, 조○○, 윤○○과 최○○(○○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사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 황○○(위반자 조○○의 지인)은 위 '○○'의 공연 전날인 2016. 11. 4. 19:00경 '○○횟집'(○○시 ○○동 소재)에서 같이 저녁시사를 하였고, 위반자 윤○○은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법인카드로 전액 지불하였다.

다. 이에 관하여 ○○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소속 기관장인 ○○시장은 위반자들의 위 음식물 수수 ·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7. 1. 4.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 조○○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의공연제작사인도○○의대표이사인윤○○으로부터음식물을제공받고, 위반자 윤○○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한 30,000원을 초과하는 49,200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반자 조○○은 당시 치과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음식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반자 조○○은 위 식사자리가 끝나고 나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는 술값 80,000원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청탁금지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 해당 위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경각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위반자 윤○○과 도○○는 위반자 조○○과 조○○에 대해 각 49,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각 100,000원씩 합계 2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자 조○○, 조○○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위반자 윤○○, 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3.

수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과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 ○○지사에 근무하던 토목직 5급 공무원 A(이하 '위반자'라 한다)은 「2016년 ○○지사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직자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지사 관내의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위반자는 B건설의 이사 C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6. 12.경 ○○도 소재 식당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반자에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위반자는 B건설의 포장공사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에 따라 B건설에 대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지급된 점이 ○○공사 ○○지사의 감사 결과 문제 되었다.

라. ○○공사 ○○지사장은 2017. 3.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및 결론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인 B건설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사내 감사 결과 실제로 위반자가 공여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집행된 점이 문제가 된 점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과5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B에 있는 C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사실, 위반자가 2016. 10. 5. 16:30경 위 C 계획운영과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위 D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의 직원들의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는 위반자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는 위 D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일 뿐 D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 원인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D와 위반자의 관계, 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의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사정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과1027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B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D는 B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 ·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나. 위반자는 2016. 11. 12. 위 D을 비롯하여, E, F과 함께 골프를 쳤다(이하 '이 사건 골프 모임'이라 한다). 위반자는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특히 주식회사 C가 2016. 8. 24.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G'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때 D는 B군 건설교통과 소속으로서 위 용역업무의 감독을 직접 담당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도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B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B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직무관련성이 없다.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써 발주처의 이권개입이 있을 수 없고 수행금액도 비교적 소액(1,100만 원 상당)으로 D에 대하여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② 지역 내 토목관련종사자들 사이의 친목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③ 위반자가 D의 그린피 25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D가 동반자들의 캐디피 12만원을현금으로 계산하였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와 D 사이에 당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D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목 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란 형법 제20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6.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반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고 D는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2달 전까지 직접 위반자 수행 용역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②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 D은 감봉 1월의 징계 및 징계계부가금 5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골프모임의 동반자로서 그 외에도 B군 도시건축과 소속 E와 ○○공사 H으로 있던 F가 있었는바, F는 이 사건 골프모임건으로 2017.6. 해임되었고, E 역시 타 건축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③ 접대한 골프비용 250,000원은, 그 가액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범위(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를 넘어서므로,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금품제공 금액에 관한 판단

D는 2017. 2. 2. 행정자치부 감사실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반자가 자신의 골프비용 25만 원(그린피 20만 원, 카트료 2만 원, 캐디피 3만 원의 합계, 이는 해당 골프장에 공지된 그린피, 카트료, 캐디피의 비회원 주말가격과 일치한다)을 부담 하였고 자신은 돈을 낸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B군수로부터 위반자가 25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통보의뢰가 있었고 D도 수수 금품등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실, 위반자는 D가 캐디피 12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위 25만 원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비교적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D가 위반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에 대하여 받은 금품등 가액 25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 부가금 부과의결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 화 044)200-7709
홈페이지 www.acrc.go.kr
디자인/인쇄 쵸이스디자인 044)868-2634~5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